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5. 23. 신종갑 의원 외 7인

나. 회부일자: 2023. 5. 25.

다. 상정일자: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3. 6. 1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김승수 의원

가. 제안이유

- 보육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신장하고, 나아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함.

나.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책무(안 제3조)

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검토보고 (장흥용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신종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 안 제7조~제8조까지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에 관한 사항 및 추진사업을,
 -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권리는 교육권과 보육교사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경제적 권리, 기본적인 인권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증진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의 질과 영유아의 복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지금까지 보육현장에서의 인권 및 권익은 교육의 객체인 아동을 주 대상으로 했으나, 이제는 보육교직원의 인권과 권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한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2021년)를 보면 보육교사의 68.3%가 마찰·갈등 경험이 있고 학부모 등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대부분은 참거나 하소연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음.(참고자료 2)

-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4조에 따른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사 위원회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

■ 권리침해 경험유무

구 분		빈도(N)	비율(%)
권리침해	있다	299	29.3
	없다	723	70.7
전체		1,022	100

■ 권리침해 주체

구 분		빈도(N)	비율(%)
권리침해 주체	학부모	178	59.5
	원장	149	49.8
	동료 교사	172	57.5
	기타 대상	5	1.7

[출처 : 한국영유아보육학회 - '보육교사의 권리침해 실태 및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 2021]

3. 마포구 어린이집 현황

(2023. 4. 30현재)

구분	계	구립	법인외	민간	가정	협동	직장
시설수	181	85	4	25	45	4	18
보육현원	5,815	3,465	95	987	554	108	606
보육교사	1,437	803	28	205	200	30	207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